

의안번호	2125656
의 퇴 인	김주영의원
회 답 일	2023. 12. 19.
추 계 번호	23B4933

해양레저산업발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 단위로 해양레저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레저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억 4,800만원, 2029년 4,8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3억 4,000만원(연평균 6,8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해양레저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100	—	—	—	—	100	20
해양레저산업발전위원회(안 제6조)	48	48	48	48	48	240	48
합계	148	48	48	48	48	340	68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5조(해양레저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해양레저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당해 연도의 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6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6조(해양 레저산업발전위 원회)	해양레저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조정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u>해양레저산업발전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u>분과위원회</u> 를 둔(제7항)	의무규정
4	안 제7조(협회 의 설립)	해양레저산업에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와 관련된 업 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양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 여 <u>해양레저협회</u> (이하 “협회”라 함)를 설립할 수 있음(제1항)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u> 는 제4항제5호에 따라 협회에 위탁 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5	안 제8조(해양 레저산업 종사 인력의 교육·훈 련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 과 새로운 기술 및 그 운영기법의 향상을 위한 <u>교육·훈련방안</u> 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u>해양레저산업에 종사하는</u> <u>자의 교육·훈련프로그램</u> 에 대한 <u>행정적·재정적 지원</u> 등을 할 수 있음(제2항)	의무·재량규정
6	안 제9조(해양 레저산업 교육 과정의 확대 등)	국가는 <u>해양레저산업 관련 자격제도</u> 를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 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u>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u> 하여야 함(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산업 <u>전문인력</u> 의 원활한 수급 및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특성화된 대학 등 <u>교육기관을</u> <u>운영·지원</u> 할 수 있음(제3항)	의무·재량규정
7	안 제10조(해양 레저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 진)	해양수산부장관은 <u>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u> 을 촉진하 기 위하여 <u>다음 각 호의 사항</u> 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1.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해양레저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센터의 건립 6.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 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개 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u>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u> <u>거나 이를 산업화</u> 하는 자에게 <u>필요한 경비</u> 를 지원할 수 있음 (제2항)	의무·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1조(판로 확대 및 국제교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해양레저산업과 관련된 전시회 및 박람회</u> 를 개최하여 <u>판로확대</u> 와 <u>국제교류 활성화</u> 를 촉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해양레저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u> 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산업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u>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u> 할 수 있음(제2항)	
9	안 제12조(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재정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산업의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레저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재정·금융·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13조(해양레저산업 안전)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산업 안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양레저산업 관련 사고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함(제4항)	
11	안 제14조(해양레저산업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는 <u>해양레저산업 이용자의 권익보호</u> 를 위하여 <u>다음 각 호의 시책</u> 을 강구하여야 함	의무규정
		1. 해양레저산업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2. 해양레저산업 이용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해양레저산업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12	안 제15조(통계의 작성·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발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u>해양레저 관련 통계</u> 를 <u>작성·관리</u> 하여야 함(제1항)	의무·재량규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전문성이 있는 기관</u> 을 지정하여 <u>수행</u> 하게 할 수 있음(제3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미대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안 제5조(해양레저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 기본계획 수립(제1항)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유사사례) 참고
		—	• 미대상(제6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6조(해양레저산업발전위원회)	○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
4	안 제7조(협회의 설립)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해양레저협회에 위탁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현시점에서는 위탁 업무의 구체적 계획 및 내용을 예상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5	안 제8조(해양레저산업 종사 인력의 교육·훈련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레저산업 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현시점에서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구체적 계획 및 지원방안을 예상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전문가(정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중 – 사업내용: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2, 제28조의12에 따른 정비업 제도신설로 정비업 등록에 필수적인 정비사 자격증 취득 대상자에 대한 법정교육 위탁운영 예산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안)</th></tr><tr><td>해양관광육성(2034-310)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내역사업) 중 ‘마리나전문가육성’</td><td>—</td><td>1,000</td><td>700</td><td>700</td></tr></table>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안)	해양관광육성(2034-310)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내역사업) 중 ‘마리나전문가육성’	—	1,000	700	700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안)									
해양관광육성(2034-310)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내역사업) 중 ‘마리나전문가육성’	—	1,000	700	700									
6	안 제9조(해양레저산업 교육과정의 확대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레저산업 특성화 대학 등 교육기관을 운영·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현실점에서는 교육기관 운영·지원의 구체적 계획 및 내용을 예상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7	안 제10조(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	• 미대상 - 현행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개발(R&D) 사업을 통해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개발 업무를 추진중이므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사업내용: 친환경·보급형 레저선박의 표준선형 등 제작 표준화 연구개발, 중소기업 대상 제작기술 지원 및 인공지능·로봇틱스를 융합한 수중레저활동 모니터링 기술개발 등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안)</th></tr><tr><td>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개발(R&D) (2046-308)</td><td>—</td><td>2,000</td><td>4,000</td><td>4,200</td></tr></table>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안)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개발(R&D) (2046-308)	—	2,000	4,000	4,200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안)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개발(R&D) (2046-308)	—	2,000	4,000	4,200									
8	안 제11조(판로확대 및 국제교류 활성화)	—	• 미대상 - 현행 해양관광육성(2034-310) 사업의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내역사업) 중 ‘레저장비산업’을 통해 관련 업무를 추진중이므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사업내용: 국내 중소레저선박 제조업체의 해외판로 개척 및 해외 선진 기술 벤치마킹 지원을 위한 국내 보트쇼 개최 및 해외보트쇼 참가 지원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안)</th></tr><tr><td>해양관광육성(2034-310) - 해양레저스포츠저변확대(내역사업) 중 ‘레저장비산업지원’</td><td>530</td><td>530</td><td>530</td><td>200</td></tr></table>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안)	해양관광육성(2034-310) - 해양레저스포츠저변확대(내역사업) 중 ‘레저장비산업지원’	530	530	530	200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안)									
해양관광육성(2034-310) - 해양레저스포츠저변확대(내역사업) 중 ‘레저장비산업지원’	530	530	530	200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9	안 제12조(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재정 등 지원)	—	• 미대상 － 현행 해양관광육성(2034－310) 사업의 ‘해양관광인프라 조성’(내역사업)을 보트쇼 등 관련 업무를 추진중이므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사업내용: 조선 및 해운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마리나산업 고도화 기반확충을 위해 마리나비즈센터를 조성하고, 해양레저관광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센터 조성 등을 지원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안)</th></tr><tr><td>해양관광육성(2034－310)</td><td>41,226</td><td>51,940</td><td>50,269</td><td>31,061</td></tr><tr><td>－ 해양관광인프라 조성</td><td></td><td></td><td></td><td></td></tr></table>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안)	해양관광육성(2034－310)	41,226	51,940	50,269	31,061	－ 해양관광인프라 조성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안)														
해양관광육성(2034－310)	41,226	51,940	50,269	31,061														
－ 해양관광인프라 조성																		
10	안 제13조(해양레저산업 안전)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가가 해양레저산업 안전 정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사고조사 전담기구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현시점에서는 해양레저산업 안전 정책, 사고조사 전담기구의 규모 및 전문인력 수, 사고조사 사업비 등의 구체적 계획을 예상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11	안 제14조(해양레저산업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가가 해양레저산업 이용자의 권익보호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현시점에서는 이용자의 피해구제조치, 위해 방지,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등 해양레저산업 이용자의 구체적 권익보호 시책을 예상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12	안 제15조(통계의 작성·관리)	—	• 미대상 － 현행 해양관광육성(2034－310) 사업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내역사업) 중 ‘해양관광 산업 통계기반 구축 및 동향분석’을 추진중이므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사업내용: 해양관광산업의 현황과 산업 규모 및 트렌드 분석을 통한 정책개발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안)</th></tr><tr><td>해양관광육성(2034－310)</td><td></td><td></td><td></td><td></td></tr><tr><td>－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내역사업) 중 해양관광 산업 통계기반 구축 및 동향분석</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r></table>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안)	해양관광육성(2034－310)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내역사업) 중 해양관광 산업 통계기반 구축 및 동향분석	100	100	100	100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안)														
해양관광육성(2034－310)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내역사업) 중 해양관광 산업 통계기반 구축 및 동향분석	100	100	100	10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해양레저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해양레저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양수산부 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1억원으로 가정
 - (유사사례) 제2차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2023~2027)
 - － (용역예산) 1억원 (2022년)
 - － (법적 근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¹⁾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
 - － (시간적 범위) 2023년 ~ 2027년(5년)
 - － (내용적 범위) 수중레저활동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관리, 교육·연구, 민·관 협업 및 산업육성 기반 마련 등
- 추계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 단위로 해양레저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억원으로 추계됨

[표 2] 해양레저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기본계획 수립	100	—	—	—	—	10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 해양레저산업발전위원회(안 제6조)

- 해양수산부에 해양레저산업발전위원회를 두는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제정안은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해양레저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 위원회는 총 25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민간위원 수는 20명(80%)으로 가짐
 - 제정안의 위원 구성 요건²⁾을 고려하여 안배한 것임
 - (당연직 위원) 해양레저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 (위촉직 위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해양레저산업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표 3] 해양레저산업발전위원회 구성(안)

(단위: 명)

구분	위원 수	비고
당연직 (공무원)	5	• 해양수산부 소속 2명(해양수산부장관, 소속 고위직 공무원) • 해양경찰청 소속 1명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1명 • 행정안전부 소속 1명
위촉직 (민간위원)	20	•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해양레저산업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합계	25	

자료: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안 제8조(해양레저산업발전위원회) ① ~ ② (생략)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⑤ 당연직 위원은 해양레저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 ⑥ 위촉직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해양레저산업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분과위원회는 2개가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민간위원 수는 본위원회와 동일하게 총 인원의 약 80% 규모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
 - 해양레저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조정·의결 사항³⁾을 고려하여 구분한 것임

[표 4] 해양레저산업발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안)

(단위: 명)

구분		주요 기능 (안 제6조제2항)	총 인원	민간위원 (총 인원의 약 80%)
해양레저산업발전위원회 (본위원회 1개)		아래 1~5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25	20
분과위원회 (2개)	1분과	1. 해양레저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5	12
	2분과	3. 해양레저산업과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8

주: 민간위원 수는 총 인원의 약 80%로 가정
 자료: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⁴⁾
 - 이때, 추계기간 동안 회의참석 사례금 지급 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회의개최 횟수는 해양수산부 소관 ‘해수욕장평가위원회’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본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이때, 2개 분과위원회는 본위원회와 동일하게 각각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 유사사례인 해수욕장평가위원회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회의개최 실적이 없음을 고려한 것임

3) 안 제6조(해양레저산업발전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양레저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해양레저산업과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3. 5., 214쪽)

[표 5] 해수욕장평가위원회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 개최 현황: 2020~2022년

(단위: 회)

	2020년	2021년	2022년	평균
해수욕장평가위원회	2	2	2	2
해양수산발전위원회	3	7	6	5.3
평균	2.5	4.5	4.0	3.7

주: 회의 횟수는 출석회의 및 서면회의를 합산한 것임

자료: 해양수산부, 행정기관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2023.10.)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 결과, 해양레저산업발전위원회 구성·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2억 4,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해양레저산업발전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명, 회, 만원/명·회,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분위원회 (1개)	민간위원 수(A)	20	20	20	20	20	—
	회의개최 횟수(B)	4	4	4	4	4	—
	사례금 단가(C)	30	30	30	30	30	—
	소계 (D=A×B×C)	24	24	24	24	24	120
분과위원회 (2개)	2개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수(E)	20	20	20	20	20	—
	회의개최 횟수(F)	4	4	4	4	4	—
	사례금 단가(G)	30	30	30	30	30	—
	소계 (H=E×F×G)	24	24	24	24	24	120
합계(I=D+H)		48	48	48	48	48	240

주: 민간위원 수는 총 인원의 약 80%로 가정

자료: 제정안 및 해양수산부 소관 위원회 활동내역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 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이현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해양레저산업 관련 예산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해양레저산업 관련 예산

- (사업목적) 해양관광·레저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급증하는 해양관광·레저 수요에 대응하고, 관련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현행 해양레저산업 관련 예산: 2020~2024년(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 내용	2021	2022	2023	2024(안)
해양관광육성 (2034-310)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조선 및 해운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마리나산업 고도화 기반확충을 위해 마리나비즈센터를 조성하고, 해양레저관광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해양레저관광 거점,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센터 조성 등을 지원	41,226	51,940	50,269	31,061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관련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현황조사, 우수 해수욕장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원 등	1,474	2,112	3,012	3,950 (내역통합: 내역사업명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로 변경)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해양스포츠 인구 저변확대와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국 해양스포츠제전과 스포츠대회 지원 및 전국민 대상 무료체험교실 등 운영	5,250	3,950	3,650	
	해양레저관광정보 기반구축	산업 통계기반 구축 및 동향분석, 해양관광레저 정보시스템 고도화, 마리나 정보화시스템 운영	300	300	300	30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및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23.8.